

1. 개정이유

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「항공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18789호, 2022. 1. 18 공포, 2025. 1. 19 시행)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신고 기준 및 세부방법 신설(안 제96조의3)
- 나.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(안 별표 10 및 안 별표 10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6조의3(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)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수술 또는 침습적 시술을 요하는 경우
2.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장애가 동반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(다만, 단순처치 등 20일 이내의 단기 치료만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
3.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및 부상의 치료목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경우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발병일 또는 진단일 중 늦은 날로부터 7

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체적·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에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(추후 첨부할 수 있다), 진단서 및 처방전(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술,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신고자 또는 소견서를 작성한 항공전문의사에게 신고서 또는 소견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날(신고자가 소견서를 추후 첨부한 경우 소견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한다)로부터 7일 이내(업무일 기준)에 신고자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따라 항공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적합성 판단 결과를 통지한 경우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체적·정신적 상태 적합성 통지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하며,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⑥ 신고자는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만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
⑦ 신고자가 항공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적합여부 판단을 재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항에서 정하는 바(재요청한 날을 신고한 날로 본다)에 따라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⑧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새롭게 받으려는 신고자의 경우에도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아야 한다.

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업무 등에 종사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별표 10 제1호나목8) 중 “27) · 29) · 33) · 34)”를 “29) · 31) · 35) · 36)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10) 위반행위란 10) 중 “16), 17) 및 20)”을 “18), 19) 및 22)”로 한다.

별표 10 제2호가목12)와 1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12)부터 36)을 각각 14)부터 38)로 한다.

12)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8호의2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13)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8호의3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
별표 10의2 제2호가목7)과 8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7)부터 13)을 각각 9)부터 15)로 한다.

7)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8)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	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항공업무 등 종사 제한 관련 적용례) 제9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부터 적용한다.

신체적·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일
기본 정보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연락처	
항공종사자 자격증명	종류/형식	자격증명번호	
항공신체 검사증명 (기존)	종류	유효기간	
	항공업무 범위 한정 조건 또는 제한사항 【 】 있음 (조건부 판정사유:) 【 】 없음		
신체적· 정신적 상태 저하 관련	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의3제1항의 【 】 제1호 【 】 제2호 【 】 제3호 【 】 제4호에 해당		
	발병일자 또는 진단일자		
	소속기관 보고 일자(항공업무 배제 일자)		
	주증상, 진단명, 진단기간 및 복용약		

「항공안전법」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체적·정신적 상태 저하 발생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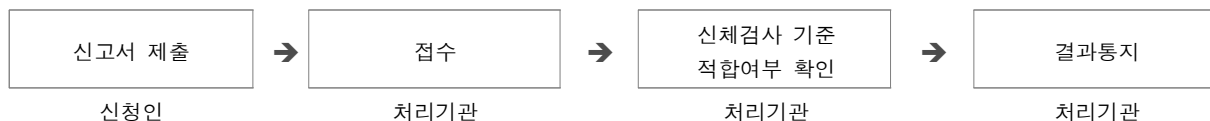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항공전문의사 소견서 2. 진단서, 처방전 등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체적·정신적 상태 적합성 통지대장

[illegible]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6조의3(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</u> <u>한)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“국</u> <u>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</u> <u>· 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</u> <u>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 <u>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</u> <u>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</u> <u>수 있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</u> <u>수술 또는 침습적 시술을 요</u> <u>하는 경우</u> <u>2.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</u> <u>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</u> <u>수 있는 기능장애가 동반된</u> <u>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</u> <u>경우(다만, 단순처치 등 20일</u> <u>이내의 단기 치료만 요하는</u> <u>경우는 제외한다.)</u> <u>3.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</u> <u>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</u> <u>수 있는 질병 및 부상의 치료</u> <u>목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경우</u> <u>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</u> <u>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</u>

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발병일 또는 진단일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체적·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에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(추후 첨부할 수 있다), 진단서 및 처방전(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첨부하여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술,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신고자 또는 소견서를 작성한 항공전문의사에게 신고서 또는 소

견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날(신고자가 소견서를 추후 첨부한 경우 소견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한다)로부터 7일 이내(업무일 기준)에 신고자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따라 항공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적합성 판단 결과를 통지한 경우 별지 제48호의3 서식의 신체적·정신적 상태 적합성 통지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하며,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⑥ 신고자는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만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
⑦ 신고자가 항공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

에는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적합여부 판단을 재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항에서 정하는 바(재요청한 날을 신고한 날로 본다)에 따라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⑧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새롭게 받으려는 신고자의 경우에도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아야 한다.

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업무 등에 종사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